

제30호

### 행정명령

#### 주 기관, 당국 및 단체에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지역에 특정 재량 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지시

뉴욕주의 주택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대 비용은 부분적으로 주택 개발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주택 제안의 승인을 금지하여 개발 비용을 늘리고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부담스러운 지방 정부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에**,

주택 개발, 특히 다가구 주택의 생산을 저해하는 지역 정책, 관행 및 결정이 고용 성장을 저해하고, 생활비를 증가시키며, 난개발에 기여하고, 교통 문제와 통근 시간을 악화시키고, 저소득층 가구와 유색인종 가구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정책, 관행 및 결정이 공중 보건, 안전 및 일반 지역사회 복지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뉴욕주에는 지역 계획, 토지 사용 및 구역 설정 관행과 주택 생산에 관한 중요 정보가 부족하며, 이는 모두 뉴욕주가 주택 개발을 지원하고 뉴욕 전역의 주택 성장에 대한 장애물을 식별하고 시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특정 기금의 우선 순위에 대한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주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재량 기금을 우선적으로 수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공중 보건, 안전 및 일반 지역 사회 복지를 가장 잘 보장 및 유지하고 뉴욕 전역의 주택, 특히 다가구, 저렴하고 지원적 주택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역 주택 정책, 관행 및 결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주정부의 관심사이자 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정의:

- a. “해당 주정부 기관(Affected State Entities)”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 사무국과 부서, 및 (ii)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공공 기관법 제2조에 정의된 주 정부 또는 국제 기관과 공공 기관법 제2조에 정의된 지방 당국을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 이사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익 법인, 공공 기관, 이사회, 위원회 등을 의미합니다.
- b. "지역"이란 해당하는 경우 일반 도시법, 타운법, 빌리지법, 자치법 또는 기타 주법에 따라 계획, 토지 사용, 구역 설정 및/또는 지역 성장 및 개발을 규제하는 모든 도시, 타운 또는 빌리지를 의미합니다.
- c.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를 말합니다.
- d.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다음 프로그램:

- A.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
- B.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NY Forward 프로그램
- C.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지역위원회 캐피털 펀드(Regional Council Capital Fund) 프로그램
- D.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에서 운영하는 뉴욕 메인 스트리트(New York Main Street) 프로그램
- E.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켓 뉴욕(Market New York)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자본 보조금
- F.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롱아일랜드 투자 기금(Long Island Investment Fund, LIIF)
- G.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미드-허드슨 모멘텀 펀드(Mid-Hudson Momentum Fund)
- H.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대중교통 현대화 강화 프로그램(Public Transportation Modernization Enhancement Program, MEP) 및

ii.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 예산에서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기타 모든 프로그램

e.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인증"은 해당 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이 주택 증식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는 해당 지역이 어떤 기준 또는 얼마나 많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인증을 설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또한 다음 약관도 적용됩니다.

i. "인증된 지역"은 해당 부서로부터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ii. "비인증 지역"은 해당 부서로부터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인증을 받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2.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해당 주정부 기관은 인증된 지역에서 신청한 지역성 신청에 해당 기금에 대한 지역성 신청서 중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각 인증된 지역이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된 지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단,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비인증 지역의 신청이 주택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 개발을 포함하여 주택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특정 주택 개발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비주택 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적인 경우 비인증 지역의 신청이 인증 지역의 신청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이 항은 영향을 받는 주 기관이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해당 부서가 Pro-Housing Community 프로그램 인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해당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정책 또는 프로그램 결정에서 추가 주택 건설의 목표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피해 국가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4. 해당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자신의 소유 및 통제 하에 있는 개발 토지 및 미개발 토지의 구획을 검토하거나 협력하여 잠재적 주택 개발 부지를 식별하고 해당 구획이 인접 또는 인근 구획의 주택

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뉴욕주립대학교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소포
  
- b. 기존 주차 시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메트로폴리탄 교통 당국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소포
  
- c. 기존 주차 시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뉴욕주 교통부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소포.

2023년 7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